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03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윤준병 · 곽상언 · 한병도
서영석 · 소병훈 · 이성운
임미애 · 송옥주 · 이병진
서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또는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행위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자들은 자진신고를 통해 자신들은 감면을 받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은 과징금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중한 제재를 받아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털어내기’식 자진신고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거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크게 위배되는 만큼 보완이 필요함.

이에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한 사업자이거나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사업자 중 시장 지위가 가장 높은 사업자의 자진 신고 감면혜택을 배제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진 신고를 통해 시장 지위가 낮은 경쟁사들이 부당하게 퇴출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건전한 시장 경쟁 구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 ----- ----- ----- ----- ----- ----. <u>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도모한 자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